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성숙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 법률에 어긋나는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 위탁 절차를 상위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하였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조(「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제3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제32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 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중 “광역시장·도지사”를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광역시장·도지사”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5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허목의 영업정지 처분 내용의 2차란 중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6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략) <u><신 설></u>	제36조(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u>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8조의3(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공</u> <u>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3</u> <u>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u> <u>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u> <u>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u> <u>에게 위탁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u> <u>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u> <u>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u> <u>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u> <u>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독점</u> <u>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u>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u> <u>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은</u> <u>“법 제24조의3제3항”으로 본다.</u>	<u><삭 제></u>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11조제1항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眞義)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 라. (생략) 2. (생략)	제19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 ----- -----. 1. ----- ----- ----- ----- -----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 나.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32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3조제1항제10호다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제32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 ----- ----- -----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 라. (생략) 2. (생략)	-----. 1. ----- ----- ----- ----- -----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 나.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2. (생략)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4. ~ 10.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 ----- -----.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제5호 및 법 제52조제1항·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4. ~ 10. (현행과 같음) <u><삭 제></u>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등) ① (생 략) ② 삭 제 ③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 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 제8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는 회사 2. (생 략) ④·⑤ 삭 제 ⑥ ~ ⑨ (생 략)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 제31조제1항--- ----- ----- 2.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4264